

# 『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1일

제163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 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이 차등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, 국가유공자 등이 동일하게 수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수수료 감면대상 추가(안 제6조제3호)

- 국가보훈대상자인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
- 기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용어의 개정사항 정비

## 라. 참고사항

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결

### 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증명서 수수료 차등 적용으로 인한 '지역별 형평성 문제'가 제기됨에 따라, 수수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